

31. 캐나다(Canad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(CPP) 가입자·사용자 각 4.95%, 자영자 9.9% (QPP) 가입자·사용자 각 5.4%, 자영자 10.8%	(CPP) 근로자·사용자 각 5.1%, 자영자 10.2% (QPP) 근로자·사용자 각 5.55%, 자영자 11.1%	0.3%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C\$51,100 / 3,500	C\$57,400 / 3,500	상한 C\$ 6,300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27년(노령부조), 1937년(맹인부조), 1954년(장애부조, 1955년 시행)
- **현행법** : 1951년(보편적 기초연금, 1952년 시행), 1952년(소득조사보조금, 1967년 개정), 1965년(사회보험, 1966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보편적 기초연금 및 사회보험, 사회부조

3 적용대상

- 보편적 기초연금 및 사회부조(노령보장, OAS) : 법적 캐나다 거주자
- 사회보험(캐나다연금[CPP] / 퀘벡연금[QPP])
 - 당연적용 : 캐나다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자영자
 - 적용제외 : 임시직 근로자(연소득이 C\$3,500 미만)
- ※ 캐나다의 주정부가 캐나다 연방의 사회보장제도인 CPP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(퀘벡의 사회보장제도인 QPP) 해당 주는 연방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 제도 간에 급여는 이전 가능

○ 보편적 기초연금 및 사회부조

- 근로자 : 없음
- 사용자 : 없음
- 자영자 : 없음
- 정부 : 총 비용

○ 사회보험

- 근로자
 - CPP : 18~69세, 가입소득의 5.1%(2023년까지 5.95%로 점진적 상향조정), 65~69세의 연금수급자는 임의가입임
 - QPP : 18세 이상, 5.55%(2023년까지 6.4%로 점진적 상향조정)
- 사용자
 - CPP : 18~69세, 가입소득의 5.1%(2023년까지 5.95%로 점진적 상향조정), 65~69세의 연금 수급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선택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는 의무임
 - QPP : 18세 이상, 5.55%(2023년까지 6.4%로 점진적 상향조정)
- 자영자
 - CPP : 18~69세, 가입소득의 10.2%(2023년까지 11.9%로 점진적 상향조정)
 - QPP : 18세 이상, 11.1%(2023년까지 12.8%로 점진적 상향조정)
- 정부 : 없음.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※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하한액 : 연 C\$3,500

※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 : 연 C\$57,400

※ 소득한도조정 : 소득 상한액은 평균 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반면 하한액은 고정

○ 노령급여

- 보편적 기초연금(노령보장, OAS)
 -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65세 도달자. 퇴직요건 없음
 -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의 국외지급 가능
 - 소득조사 : 고소득자(연 소득이 C\$77,580 이상)의 연금은 환수대상으로 연 소득 C\$125,937이 환수됨
 - 연기연금 :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음
 - 보장소득보조금(소득조사, GIS) : 연 소득이 싱글 C\$18,408, 커플 C\$24,336 미만인 수급자에게 지급(2019년 7~9월 기준). 연금 수급자가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(동성 또는

이성)가 있는 경우 소득은 개인 소득 또는 가족 소득에 기초함. 보조금은 최대 6개월 동안 해외 지급 가능

- 노령수당(사회부조; 소득조사)
 -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60~64세 도달자로 C\$34,080미만 소득자이며 그 청구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(동성 또는 이성)가 GIS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. 노령수당은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중단되며 소득에 따라 OAS와 GIS으로 대체됨
- 노령연금(CPP/QPP, 사회보험)
 - 1회 이상 유효한 연간 보험료를 납부한 65세 도달자(조기 60세), 퇴직요건 없음
 - 연기연금 : 계리적 증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가능
 - 캐나다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(Canada Pension Plan Post-Retirement Benefit) 또는 퀘벡 연금제도 퇴직연금보조금제도(Quebec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 Supplement): CPP/QPP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일을 지속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에 지급 (CPP의 경우 보험료 납부는 최대 70세까지인 반면 QPP의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음)
 - 사회보험 노령연금 해외지급 가능

○ 장애급여

- 사회보험 연금(CPP/QPP, 사회보험)
 - 65세 미만이어야 하며, 실질적으로 급료를 받는 직업을 저해하는 장기 중증 장애로 판정 받아야 함. CPP의 경우, 최종 6년 중 4년 이상 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거나 최소 25년의 납부기간을 가진 자로서 최종 6년 중 3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로 CPP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야함. QPP의 경우,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은 최종 3년 중 2년임; 최종 10년 중 5년을 납부해야함; 또는 최소 2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18세 이후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월까지 기간 중 절반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
 - 아동수당 : 18세 미만에게 지급 (CPP에 한해 정규학생인 경우 25세까지 지급)
 - 장애연금 자격을 위한 연 최저소득은 C\$5,700 (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대소득 (C\$57,400)의 10%로 C\$100 단위 절사)
 - 장애연금은 법적 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며 사회보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사회보험 장애연금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수당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18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60~64세의 저소득 (2019년 7~9 월 기준 연간 소득 C\$24,816 미만)배우자에게 지급됨
 - 재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 중단
 - 법적 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며 가입자 소득에 따라 OAS 또는 GIS로 대체
- 사회보험 유족연금(CPP/QPP, 사회보험)
 -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; 또는 18세 이후부터 사망 월까지의 기간 중 1/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(동성 또는 이성) 그리고 18세(CPP에

한해 정규학생인 경우 25세) 미만 피부양 자녀

- 유족연금은 재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음. 유족 배우자가 이전 관계에 따른 1건 이상의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 금액이 더 큰 배우자 연금만 지급됨
- 사망급여 (CPP/QPP, 사회보험) :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; 또는 18세부터 사망 월까지의 기간 중 1/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지급
- 사회보험 유족연금과 사망급여 국외지급 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보편적 기초연금(OAS, 소득조사)
 - 18세 이후 캐나다에 거주한 1년당 최대 연금액의 0.025배 산정한 금액으로 최대 40년까지 산정
 - 월 최대 연금액 : C\$607.46 (2018년 7~9월 기준)
 - 소득조사 : 고소득자(연 소득이 C\$77,580 이상)의 연금은 환수대상(연금은 소득세 공제분과 비용을 제외한 연 소득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15%까지 감액됨)으로 연 소득 C\$126,058이 환수됨
 - 연기연금 : 65세 이후부터 70세까지 연기된 1개월 당 0.6% 씩 연금액 증액
 - 보장소득보조금(GIS, 소득조사) : 보조금을 포함한 월 최대 보편적 기초연금액은 연간소득에 따라(파트너가 있으면 연간 소득 합산) 독신이거나 파트너가 OAS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월 C\$907.30까지, 파트너가 OAS를 수령하는 경우 월 C\$546.17까지 지급
 - 급여조정 :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분기별 조정
- 노령수당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최대 월 C\$1,153.63 지급(2019년 7~9월 기준)
 - 급여조정 :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분기별 조정
- 노령연금(CPP/QPP, 사회보험)
 - 연금액은 가입자의 평생 월 평균 연금소득의 25%인 기본연금과 가입자의 첫 번째 부가 월 연금소득의 8.33% 두 요소를 합산한 금액(2024년 1월 1일에 다른 요소 도입 예정)
 - 첫 번째 부가 월 연금소득은 18세부터 40년 되는 날 또는 2019년 1월 1일 중 늦은 날부터 연금 청구일, 70세 또는 사망일 중 빠른 날 까지의 최고 소득. 7세 미만 아동을 돌본 달은 출산 또는 입양 전 5년간 피보험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피보험자가 장애급여를 받은 달은 장애가 시작되기 전 6년간 피보험자의 평균 소득의 70%를 인정
 - 최저 소득 월의 17%(CPP) 또는 15%(QPP),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한 월 또는 가입자가 장애급여를 받는 월은 제외될 수 있음

- 보험료 납입기간이 39년인 경우 월 최대연금액은 C\$1,154.58
- 조기연금 : 65세 이전에 연금을 청구하는 1개월 당 0.6%씩 최대 36% 감액
- 연기연금 : 65세 이후 연기되는 1개월 당 0.7%씩 최대 42% 증액
- CPP퇴직급여제도/QPP퇴직연금보조금제도 : 월 최대연금액의 1/40에 해당되는 금액 이내로 추가 지급(CPP); 연금수급자가 일을 지속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1년 당 가입자의 전년도 가입 연 소득의 0.5%를 지급(QPP)
- CPP퇴직장애급여 : C\$496.36 추가 지급
- 혼인기간 또는 동거기간 중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파트너(동성 또는 이성)가 적립한 연금 크레딧은 이혼이나 별거 시 균분될 수 있음
- 급여조정 :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자동 조정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CPP/QPP, 사회보험)
 - C\$496.36(CPP) 또는 C\$496.33(QPP)의 월 기본연금액에 사회보험 노령연금액의 75%를 가산한 금액
 - 월 최대연금액은 C\$1,362.30(CPP) 또는 C\$1,362.27(QPP)
 - 아동수당 : 수급 가능한 아동 1명 당 월 C\$250.27(CPP) 또는 C\$79.46(QPP) 지급
 - 급여조정 :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자동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CPP/QPP, 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(CPP) : ①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노령연금의 60%(월 C\$692.75까지)가 CPP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에게 지급 ② 65세 미만의 파트너에게는 37.5%에 C\$193.66를 가산한 금액 (월 C\$626.63 까지) 지급 ③ 파트너는 유족,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동시에 수령 가능하며 그 금액은 큰 연금의 100%와 적은 연금의 60%를 더하여 노령과 유족 합산인 경우 최대 월 C\$1,154.58의 노령연금, 장애와 유족 합산인 경우 최대 월 C\$1,362.30의 장애연금까지 지급
 - 배우자연금(QPP) : 다른 QPP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① 65세 이상 배우자(사실혼 포함)에게 월 C\$ 692.75지급 ② 45세~64세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C\$929.30 ③ 45세 미만의 장애가 없고 사망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의 경우 최대 C\$893.82 ④ 45세 미만의 장애가 없고 피부양 자녀가 없는 배우자의 경우 최대 C\$560.09
 - 고아연금(CPP/QPP) : 수급 가능 아동 1인당 월 C\$250.27지급되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자동적으로 급여 조정
 - 유족수당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수급 가능한 유족에 최대 월 C\$1,375.17 지급(2019년 7~9월)되며,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분기별 급여 조정
 - 사망급여(CPP/QPP, 사회보험) : 사망인의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C\$2,500지급, 급여조정대상에서 제외

- **고용사회개발부(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)**
 - <http://www.canada.ca/en/employment-social-development.html>
 - 지방 및 지역사무소를 통해 보편적 기초연금, 사회보험(CPP), 사회부조제도 관리

- **캐나다 국세청(Canada Revenue Agency)**
 - www.cra-arc.gc.ca
 - 사회보험 연금제도 보험료 징수

- **퀘벡 재무부(Quebec Ministry of Finance)**
 - <http://www.finance.gouv.qc.ca>
 - 퀘벡 사회보험 연금제도(QPP) 감독

- **퀘벡 국세부(Quebec Department of Revenue)**
 - www.revenu.gouv.qc.ca
 - 퀘벡 사회보험 연금제도(QPP) 보험료 징수

- **퀘벡 연금위원회(Quebec Pension Board)**
 - www.rrq.gouv.qc.ca
 - 퀘벡 사회보험 연금제도(QPP)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